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3
----------	------

발의연월일 : 2025. 3.

발의의원 : 박영동 의원,

서도원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놀이터,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놀이터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11호)

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보호자를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추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추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동물보호법(법률)」(2024.1.2. 일부개정, 2025.1.3. 시행)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서 비용 발생이 예상됨(안 제19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 내용의 대부분이 광범위하고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규모 등에 따라 재정투입이 다르고 입지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19조의2)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박 영 동 (☎ 2055)